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1호
2024. 3. 20.(수)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465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91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9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5
제91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	8
제91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0
제91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12
제911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91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91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91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91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911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1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1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1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정 정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31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4651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의 특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최근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현재와 같이 별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임.
- 이에 시행예정인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문 일부를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규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노후도 요건(57%)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규정(50%)을 따르도록 함(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청사 및 연수원”을 “신청사”로 한다.

제2조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를 “신청사 건립에”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청사 및 연수원”을 “신청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연수원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 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시의회(교육위 및 예결위)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및 기금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 나. 기금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함(제1조, 제2조,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4년 3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삭제)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과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개인 홍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의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용 승인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해당 학교 규칙을 따른다.

제8조(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현재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교표, 교기, 교가 등은 학교 자원으로 관리·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전국의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편취한 음반제작업체가 적발되고, 일부 학교 교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방침이나 기준 없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내 공립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3조).
- 나. 학교 상징물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다. 학교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삭제에 위한 요건과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또는 삭제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제5조).
- 라. 학교 상징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의 요건을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조).
- 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용 승인의 절차 및 방법등은 학교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함(제7조).
- 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가.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등을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3년 3월 제정되었음.
- 나. 한편, 2019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육청이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마련됨.
- 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바,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3월 동 조례를 공포·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이나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나. 더욱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회적가치 교육은 개념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준법교육, 노동인권교육 등과 유사성이 높고 내용이 광범위해 실제 조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임.
- 나.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수정함(제7조제2항).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수정함(제2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활동”을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으로, “학교시설을”을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신청절차·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專用)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지도 및 감독)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학교시설 개방과 예외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를 안내하기 위한 이용수칙, 감독사항 등을 신설하여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과 학교시설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원칙을 정함(제3조)

나. 학교시설 이용 수칙을 정함(제12조의2)

다. 교육감의 지도, 감독사항을 정함(제1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제10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으나 폭력 근절에 부족함이 있었으며
- 나.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6건의 안건을 통합하여 2023년 10월 6일 의결함.
- 다. 법률 개정사항 중 시급히 조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을 추가함.(제8조제7호)
- 나. 교육감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제10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사유로 인하여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나.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제13조제5항, 제6항)
- 나. 대의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제1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문화학생”이란을 “다문화학생등”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다문화학생”을 각각 “다문화학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다문화 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문화학생”을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다문화학생”을 각각 “다문화학생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근거가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아동 또는 학생을 교육지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포함한 교육지원 대상자를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학생”의 정의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정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뿐 아니라 입학예정자,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함.
- 나. 조례 내용 중 “다문화학생” 문구를 “다문화학생등”으로 일괄 정비함.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문화학생의 정의에 따라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장래 희망 직업이 없다고 밝힌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한국 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음(2019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12.8%에서 19.3%로, 중학생은 28.1%에서 38.2%로, 고교생은 20.5%에서 27.2%로 큰 폭 증가함)
- 나. 비대면 수업의 영향과 진로 체험 활동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가설 아래, 전통적으로 희망 직업 순위가 높았던 직업군이 하위로 내려가고, 새로운 직업이 희망 직업 순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변화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함. 한정된 직업군 내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재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수학여행은 학생의 독립심 및 협동심을 기르고 농어촌 등 방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니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이는 서울특별시의 회 청소년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됨.
- 나. 그러나, 최근 가정에서 수업일수의 일부를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학여행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정에서 국내외 여행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참여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 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활성화와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 간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활성화,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 지원 근거 명시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을 “제7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3. 비용추계의 결과” 중 “세입”을 “지출”로, “세출”을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기존 2가지에서 1가지로 축소하여 비용추계제도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추계 서식 문제를 개선하여 비용추계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정비(제3조제1항)
- 나. 비용추계 결과 계산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91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혁신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3. 7. 1.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 및 명칭 변경과 업무 분장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일부 부존재 사항 발생
- 나.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을 명확히 하며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을 통해 심의 기능 역할 강화
-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당연직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제고

2. 주요내용

- 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명시함. (제3조의2)
-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제4조제2항)
- 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을 명시함.(제4조제3항제1호)
- 라. 20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변경함.(제4조제3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12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신설”을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로, “포함한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을 “설 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 른 인증 의무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 법’이라 한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범위 확대

- 당초: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 변경: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신축·증축(별 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
-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포함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60호(2024. 3. 15.)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
2.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제26조제1항 후단 중 “대책에”를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50”을 “7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

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
 2.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
1. 제4항제1호: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2. 제4항제2호: 별표 5와 같다. 단,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 ⑧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⑩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공람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별표 5]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
(제3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관련)

1.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이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60% 이상 70% 이하 범위 내에서 아래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근사한 값을 적용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 국민주택규모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60%	60분의 30	60분의 30
61%	61분의 33.5	61분의 27.5
62%	62분의 37	62분의 25
63%	63분의 40.5	63분의 22.5
64%	64분의 44	64분의 20
65%	65분의 47.5	65분의 17.5
66%	66분의 51	66분의 15
67%	67분의 54.5	67분의 12.5
68%	68분의 58	68분의 10
69%	69분의 61.5	69분의 7.5
70%	70분의 65	70분의 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세권등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상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통학로’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인수 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매입비의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제2조).
- 나.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함(제6조제1항제2호)
-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의2 신설)
- 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 제2항제6호)

- 마.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제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별표 5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 바.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제26조제1항)
- 사.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제42조제6항).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